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보 도 자 료
희망의 새시대
http://www.motie.go.kr

**2014년 3월 11일(화) 조간**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: 산업부 지역경제총괄과 박정욱 과장, 박신렬 사무관(044-203-4419)

# 지역중심 · 지역체감의 지역발전 추진 기틀 마련

- '14.3.11(화)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-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: 윤상직)는 「**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**」(이하 '균특법 시행령')이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3.11일(화) 공포·시행된다고 밝힘

□ 금번 개정을 통해 지역생활권*을 토대로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교육·문화·복지·환경 등 관련 정책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·도 생활권발전협의회 구성·운영방안 등 세부 사항을 마련함

* 주민생활에 필요한 일자리·교육·복지·문화 등 기초생활서비스가 종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공간으로 2~4개 시·군·구가 자율적 협약을 통해 설정

○ 시·도 생활권 발전협의회는 시·군·구가 설정할 지역생활권의 발전 전략을 담을 지역생활권발전계획 수립을 지원하고,

○ 일자리 창출, 주거환경 개선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생활권사업 발굴 등을 통해 지역이 중심이 되고 지역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발전정책을 구현해 나갈 수 있게 됨

□ 균특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을 보면,

① **지역발전계획 수립 체계를 상향식(Bottom-up)으로 변경함**

MOTIE
MINISTRY OF
TRADE, INDUSTRY & ENERGY

- 종전 광역발전계획의 수립지침 작성 시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였으나,
- 균특법 개정에 따라 법정계획으로 전환된 **시·도 발전계획 수립지침 작성 시에는 시·도지사와 협의**하여 수립하도록 규정

* (현행) 광역발전계획-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⇒ (개정) 시·도 발전계획-시·도지사

② **지역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지원기관**으로 **지역발전위원회**를 명시함

- 생활권 발전계획은 지역생활권의 특성 있는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수립하는 것으로써,
- **지역발전위원회**가 지역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**교육·자문 등의 지원**을 할 수 있도록 명시

* 종전 균특법상 '기초생활권 발전계획' 수립 지원 기관은 안행부·농식품부·국토부로 명시되었지만, 금번 개정안에서는 지역생활권 발전계획의 수립 지원기관이 지역발전위원회로 변경

③ 지역생활권 정책 지원을 위해 설치될 **시·도 생활권발전협의회***의 **구성 및 운영 관련 규정**을 신설함

* (구성) 시·도별로 시·도지사를 위원장으로 20인 이내의 위원
(기능) 지역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 등의 지원, 지역생활권 구성·운영 및 협력사업 발굴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·도지사 소속의 자문위원회

□ 정부는 이번 균특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,

○ 시·도 발전계획 수립, 시·도 생활권발전협의회 등 지역주도의 정책 추진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하면서

○ "국민에게 행복을, 지역에 희망을"이라는 신정부의 지역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'지역발전 5개년 계획'을 지역과 긴밀히 협의하여 수립하고,

○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생활권 구성·운영 등에도 만전을 다해 나갈 계획임

<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>

| 구 분 | 현행 | 개정안 |
|---|---|---|
| 발전계획 수립지침 작성체계 | < 광역경제권 발전계획 ><br>**수립지침**<br>산업부 ↔(협의) **관계부처**<br>지역발전위원회 심의<br>↓(전달)<br>**5+2광역경제권별 발전위원회** | < 시·도 발전계획 ><br>**수립지침**<br>산업부 ↔(협의) **시·도지사**<br>지역발전위원회 심의<br>↓(전달)<br>**시·도지사** |
| 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지원 기관 | ▪ 기초생활권발전계획 – 안행부<br>* 단, 다른 법률에 따라 시·군 단위의 계획을 작성시 제외<br>·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– 국토교통부<br>·「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」 – 농림축산식품부 | ▪ 지역생활권발전계획 – 지역발전위원회 |

※ 참고 : 균특법 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내용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총괄과 박신렬 사무관(☎ 044-203-4419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MOTIE
MINISTRY OF
TRADE, INDUSTRY & ENERGY

## 참고 균특법 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내용

| 구 분 | 기 존 | | 개 정 (현행) |
|---|---|---|---|
| 목표 | ▪ 지역경쟁력 강화 | ⇨ | ▪ 지역경쟁력 강화<br>(+) 주민의 삶의 질 향상 |
| 주체 | ▪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(법정기구) | ⇨ | ▪ 시 · 도<br>* 시·도 생활권발전협의회(임의기구) |
| 정책공간 | ▪ 기초생활권<br>▪ 광역경제권 | ⇨<br>⇨ | ▪ 지역생활권<br>▪ 경제협력권 |
| 계획체계 | 법정계획: 지역발전5개년계획 → 부문별 발전계획 / 광역경제권 발전계획<br>임의계획: 기초생활권계획 / 시 · 도발전계획 / 초광역개발권 구상 | ⇨ | 법정계획: 지역발전5개년계획 → 부문별 발전계획 / **시·도 발전계획**<br>임의계획: **지역생활권발전계획 (시 · 군 · 구)** |
| 주요시책 | ▪ 지역발전역량 확충<br>▪ 지역경제 활성화<br>▪ 지역인력 양성<br>▪ 문화·관광 육성<br>< 신 설 > | ⇨<br>⇨<br>⇨<br>⇨<br>⇨ | ▪ 지역발전역량 강화<br>▪ 지역경제 활성화 + 일자리 창출<br>▪ 지역 교육여건 개선 (인력 양성 포함)<br>▪ 문화·관광 육성 + 환경 보전<br>▪ 복지 및 보건의료 확충 |
| 회계명*<br>(계정명) | ▪ 광역·지역발전특별회계<br>* 지역개발계정, 광역발전계정 제주도계정 | ⇨ | ▪ 지역발전특별회계<br>* 생활기반계정, 경제발전계정 제주도계정, (+) 세종시계정(신설) |
| 사업진행 잔액사용* | ▪ 전용절차를 거친 후 사용 | ⇨ | ▪ 전용절차 없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용 가능 |

* '15.1.1일부터 시행